

총 평

수고하셨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유사하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출제자가 여러분이 만점을 받을 수 없도록 나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의 시험은 시험 당일의 컨디션과 자기가 느끼는 준비상태의 수준에 영향을 받기 쉽죠.
즉,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임하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찬찬히 공부를 해 오셨다면 정답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2개 이상은 틀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85점 전후가 선방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행운을 빌어요!

1. 수사수단의 방향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 중 횡적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장물수사	㉡ 감별수사	㉢ 현장관찰
㉣ 탐문수사	㉤ 유류품수사	㉥ 수배수사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정답 ③

- ㉡ 감별수사, ㉢ 현장관찰, ㉣ 탐문수사

2.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2. 정답 ②

형사소송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3.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수사의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 ② 경찰관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 ③ 회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④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답 ③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시행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6호, 2021. 7. 15. 일부개정]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불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 ②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법원지”라 함은 수범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범 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등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 ② “피해통보표”라 함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신체·기타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품, 유류품 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 ③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이란 개인의 인적사항 및 십지 지문 등이 채취되어 있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고속의 대용량 컴퓨터에 이미지 형태로 입력,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확인하거나 변사자 인적사항 및 현장유류 지문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로서 범죄분석담당관에서 구축·운영중인 것을 말한다.
- ④ “범죄수법”이라 함은 범죄수법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4. 정답 ④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시행 2021. 1. 22.] [경찰청훈령 제1003호, 2021. 1.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수법”이라 함은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말한다.
2. “**수법범죄**”라 함은 범죄수법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5. 다음 감유무판단 방법 중 연고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언뜻 보기에 돈이 없을 것 같은 집을 노렸을 때
- ㉡ 장물의 은닉장소가 지리에 정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 ㉢ 침입·도주경로를 상세히 알고 있을 때
- ㉣ 범인의 언어에 그 지방 사투리가 있을 때
- ㉤ 목표물이 있는 곳으로 직행하고, 필요 이상으로 물색하지 않았을 때

㉠ 살인사건 현장에 피해자가 접대한 흔적이 있을 때

- ① ㉠㉡㉢
- ② ㉠㉢㉤
- ③ ㉡㉣㉤
- ④ ㉢㉣㉤

5. 정답 ①

㉠㉡㉢ - 연고감에 해당

㉡㉣㉤ - 지리감에 해당

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와 기소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판 관련 자료는 제외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전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정답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제정]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소·**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7.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긴급배치라 함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차단, 검문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활동으로 초동조치 후 수사진행 단계에 해당한다.
- ② 발령권자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을호배치 경력동원 기준은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로 한다.
- ④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7. 정답 ①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시행 2021. 2. 9.] [경찰청훈령 제1006호, 2021. 2.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긴급배치라 함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차단, 검문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초동조치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8. 소년범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되 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소년의 가정, 학교 또는 직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당해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④ 소년법이 은어를 사용할 경우 동질감을 일으키고 상대방에 상응한 조사를 위해 수사관도 적절히 은어를 섞어 사용한다.

8. 정답 ②

소년업무규칙 [시행 2021. 1. 1.] [경찰청예규 제57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8조(조사의 유의사항)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선입견과 속단을 피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되 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소년의 가정, 학교 또는 직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5.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업무규칙 [시행 2021. 1. 1.] [경찰청예규 제57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년”이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촉법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우범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비행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호자”란 법 제2조에 따라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이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의 즉결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을 말한다.
8.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소년업무규칙 [시행 2021. 1. 1.] [경찰청예규 제57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3조(전문가의 참여)

경찰관은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년 및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하고 은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다음 수사서류 작성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p>㉠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술의 내용만을 기재하여야 하고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전자문서 출력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p> <p>㉣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종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수사서류의 열람·복사 신청에 대하여 수사부서의 장이 공개결정을 할 경우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복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전산화된 문서를 출력하여 제공한다.</p> |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정답 ④

㉠㉡㉢㉤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시행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6호, 2021. 7. 15. 일부개정] 제39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시행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6호, 2021. 7. 15. 일부개정] 제73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호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며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할 것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시행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6호, 2021. 7. 15. 일부개정] 제39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③ 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다만, 전자문서 출력물의 간인은 면수 및 총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경찰 내사 처리규칙 [시행 2021. 1. 1.] [경찰청훈령 제999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8조(내사기간 및 책임)

- ① 제5조의2를 제외하고 경찰관서의 수사팀장은 내사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송하거나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사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종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6. 19.] [경찰청예규 제562호, 2020. 6. 19. 일부개정] 제7조(제공)
 ① 제5조 제1항 제1호(공개결정) 및 제2호(부분공개결정)의 결정을 할 경우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복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전산화된 문서를 출력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장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변호인과 유치인의 접견 등에 있어서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리에서 관찰할 경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서류 기타 물건의 수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등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여야 한다.
 - ③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견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접견 시간은 1회에 30분 이내로 한다.
 - ④ 유치인보호 주무자와 유치인보호관은 항상 유치인의 유치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 전에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정답 ②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4조(변호인과의 접견 등에 관한 주의)
 ① 변호인과 유치인의 접견 등에 있어서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리에서 관찰할 경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서류 기타 물건의 수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등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여야 한다.

① 동규칙 제4조(관리책임)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동규칙 제37조(접견시간 및 요령)
 ① 유치인의 접견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평일에는 09:00 ~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토요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은 09:00 ~ 20:00까지로 한다.
 3.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견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인의 접견 시간은 1회에 30분 이내로, 접견횟수는 1일 3회 이내로 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접견자의 수를 고려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 동규칙 제42조(유치기간에 대한 주의)
 유치인보호 주무자와 유치인보호관은 항상 유치인의 유치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호송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차량호송시 호송관은 공중의 평온을 위한 피호송자의 신속한 이송 및 피호송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② 호송관은 호송주무관의 허가를 받아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호송대상자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채우지 아니한다.
 - ③ 호송관은 호송중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때 인수한 경찰관서는 진찰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지체 없이 호송하여야 한다.
 - ④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하나,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할 수 있다.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할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11. 정답 ③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5조(사고발생시의 조치)
 호송관은 호송중 피호송자가 도주, 자살,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가. 경증으로서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나.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 전 “나”호에 의하여 인수한 경찰관서는 즉시 질병을 치료하여야 하며, 질병의 상태를 호송관서 및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지체 없이 호송하여야 한다. 다만, 진찰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라. <삭 제>

- ① 동규칙 제57조 제5호
 - ② 동규칙 제50조 제1항 참조
 - ④ 동규칙 제53조 참조
12.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요 강력범죄”는 살인, 방화, 약취·유인,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 폭력배가 범한 범죄를 말한다.
 - ② 정보수집의 대상자는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으로 한다.
 - ③ 정보수집의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정보수집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수집을 종료하여야 한다.
 - ④ 정보수집의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종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12. 정답 ④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6조(심사위원회)
 ①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종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3. 과학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학수사”란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기술·기법·장비·시설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말한다.
 - ② “현장감식”이란 사건과 관련된 현장에 임하여 현장상황의 관찰, 증거물의 수집·채취 등을 통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③ 현장감식의 절차상 ‘증거물 수집·채취’는 ‘현장관찰 및 기록’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수법원지에 의한 감식, 피의자 사진에 의한 범인 추정, 사진 촬영 등은 범죄감식 중 자료감식에 해당한다.

13. 정답 ④
사진촬영은 범죄감식 중 **기술감식**에 해당한다.

14. 다음은 피의자 A의 지문을 채취한 결과이다.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문분류 번호상 A의 십지 지문 지문번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 우수무지의 지문이 말발굽모양으로 우측에 삼각도가 있고, 내단과 외단 사이에 8개의 융선이 있다.
 - 좌수지지의 지문이 활(弓)모양의 궁상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 ① 16784-28912
 - ② 26784-45671
 - ③ 42671-67891
 - ④ 31671-13432

14. 정답 ①
오른쪽 맨 끝 번호는 갑종제상문이므로 **2번**이 되어야 한다.
왼쪽 맨 앞 번호는 궁상문이므로 **1번**이 되어야 한다.

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사용하는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 ④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15. 정답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3. 6. 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1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 조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① ㉠㉡
 - ② ㉡㉢
 - ③ ㉠㉢
 - ④ ㉡㉣

16. 정답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 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전문개정 2011. 4. 12.]

17.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은 대마에 해당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 아편이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마약류관리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① ㉠(O) ㉡(O) ㉢(O) ㉣(O) ㉤(O)
 - ② ㉠(X) ㉡(O) ㉢(O) ㉣(O) ㉤(X)
 - ③ ㉠(O) ㉡(X) ㉢(X) ㉣(X) ㉤(O)
 - ④ ㉠(O) ㉡(O) ㉢(X) ㉣(O) ㉤(X)

17. 정답 ①
모두 옳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18.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상 피해자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②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으로 동행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 피의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정답 ③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신변보호의 대상)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②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며,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④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9. 정답 ④

「공직선거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따라서 ③은 틀리고, ④는 옳다.

- ①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동법 제58조 제1항 참조)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동법 제60조 제1항 참조) - **단서 규정이 없다.**

20.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②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③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작재산권은 제3관(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20. 정답 ②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